

다.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(연락처 : 043-713-8000~5, 홈페이지 : <http://www.khidi.or.kr>)

3. 위탁 업무 :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(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)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의 업무

가. 법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

나.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업무

다.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

라.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

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● **환경부고시제2016-137호**

환경부고시 「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(제2016-2호, 2016.1.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3일

환 경 부 장 관

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

유독물질 및 제한·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2014-1-724, 2014-1-725, 2014-1-726, 2014-1-727, 2014-1-728”를 각각 “2016-1-724, 2016-1-725, 2016-1-726, 2016-1-727, 2016-1-728”로 하고, 2016-1-729 및 2016-1-7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16-1-729	클로로디메틸실란[Chlorodimethylsilane; 1066-35-9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6-1-730	2-프로핀-1-올, 1-메탄술포네이트[2-Propyn-1-ol, 1-methane sulfonate; 16156-58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환경부 고시 제2016-2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개정고시 부칙에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“화학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6-138호

환경부고시 「기존화학물질」(제2016-15호, 2016.1.19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3일

환 경 부 장 관

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

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고유번호 2015-3-7165에서 2015-3-7170을 2016-3-7165에서 2016-3-7170으로 한다

고유번호 2009-3-3819란의 화학물질명을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piperazine and azacyclotridecan-2-one(CAS No. 부여안됨)에서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azacyclotridecan-2-one and piperazine(CAS No. 1000189-84-3)으로 한다.

고유번호 2016-3-7171에서 2016-3-717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2016-3-7171	[총칭명] 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polymerwithsubstitutedalkyloxirane,5-isocyanat o-1-(isocyanatomethyl)-1,3,3-trimethylcyclohexaneandbis(hydroxylcarbomonocycli c)alkane(C=3~5)
2016-3-7172	N-[1,1'-Biphenyl]-4-yl-9,9-dimethyl-N-[4-(9-phenyl-9H-carbazol-3-yl)phenyl]-9 H-fluoren-2-amine (CAS No. 1242056 -42-3)
2016-3-7173	2,3-Difluoro-1-methoxy-4-[(trans,trans)-4'-propyl[1,1'-bicyclohexyl]-4-yl]benzen e (CAS No. 431947-34-1)
2016-3-7174	[총칭명] Substitutedpolyalkylpolynaphthalenylcarbopolycycle
2016-3-7175	Coronene (CAS No. 191-07-1)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6-453호

도로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
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구 분	[] 지정 [] 기존	[] 폐지 [✓] 변경
도로의 종류		별도첨부
노선번호		별도첨부
노선명		별도첨부
기점		별도첨부
종점		별도첨부
주요 통과지		별도첨부
총연장(킬로미터)		별도첨부
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	구간	별도첨부
	연장 (킬로미터)	별도첨부

붙임 : 도로(일반국도, 국가지원지방도)노선의 변경고시 1부.